

제 23 장 분쟁해결

제 23.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해 협력 또는 협의를 통한 모든 노력을 한다.

제 23.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양 당사국간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 23.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단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패널의 설치 또는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하였으면, 그 사안에 대해 그 밖의 절차를 배제하고 선택된 분쟁절차가 이용된다.

제 23.4 조 협의

1. 당사국은 제23.2조에 언급된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기재한다.

3. 요청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

4. 양 당사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가. 긴급한 사안¹⁾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5. 양 당사국은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그 밖의 협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긴급한 사안”이란 다음과 관련된 사안을 말한다.

가. 농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짧은 기간 내에 그 품질 또는 현재 상태를 상실하는 부패성 상품, 또는

나. 가까운 미래의 특정일 이후에는 그 교역 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하는 상품(부패성 상품은 제외한다) 또는 서비스

통해 문제가 되는 모든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

6. 어느 한 쪽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관의 직원을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8. 각 당사국은 협의 시,

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 및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한다.

9.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 기간은 협의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60일을,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2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23.5 조

공동위원회의 개입

1. 양 당사국이 제23.4조제9항에 설정된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23.4조제2항에 따른 요청 당사국에 한정하여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기재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합하며,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동위원회는,

가.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거나, 작업반 또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주선, 조정, 중개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다. 권고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회합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회의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회합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1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3.6 조

패널 요청

1. 협의 기간 또는 공동위원회의 개입이 요청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위한 기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사안을 검토하도록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기재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23가를 포함한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선정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4. 패널은 제안된 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 23.7 조 패널위원의 자격

1.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무역, 그 밖의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해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진다.

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어느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2. 제23.4조에 따른 협의에 참여했던 개인은 그 분쟁의 패널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 23.8 조 패널 선정

1.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1명의 패널위원을 지명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선정된다.

다. 양 당사국은 두 번째 패널위원이 선정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패널 의장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4명의 지명 후보자로 구성된 양 당사국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다. 패널 의장은 이 명부가 교환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직접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명부에 있는 지명 후보자 중에서 추천으로 임명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4명의 지명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부에 있는 지명 후보자 중에서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의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일상적 거주지를 두지 아니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지 않고 고용된 적이 없으며, 분쟁의 대상을 어떠한 자격으로도 다루어 본 적이 없어야 한다.

마. 양 당사국은 분쟁의 대상과 관련된 전문성 또는 경험을 지닌 패널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그 패널위원은 이 조에 따라 새로운 패널위원으로 대체된다.

제 23.9 조 패널의 역할

패널의 역할은 검토 중인 분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23.10조제3항에 언급된 위임사항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사결과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 23.10 조 모범절차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23가에 규정된 다음을 보장하는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 입장을 제출할 기회, 그리고

다. 패널에서의 심리 및 심의와 더불어 심리 중에 교환된 모든 입장 및 의사소통은 비밀이다.

2.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부속서 23가에 규정된 모범절차규칙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 이후 1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

4. 패널위원 보수 및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은 분쟁의 양 당사국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5.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최초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될 것이다.

6. 서면진술서, 심리에서의 구두주장 또는 발표, 패널 보고서 뿐만 아니라 패널 절차와 관련된 양 당사국과 패널 사이의 그 밖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은 영어로 수행된다.

제 23.11 조 전문가의 역할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패널이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전에, 양 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가 수립된다. 패널은,

가. 양 당사국에 제1항에 따라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할 의사를 통지하고, 양 당사국에 자신의 의견 또는 견해를 제출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에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의 사본과 양 당사국이 자신의 의견 또는 견해를 제출할 기간을 제공한다.

3. 패널이 제1항에 따라 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고려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에 대해 양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또는 견해도 또한 고려한다.

제 23.12 조

절차의 병합

패널은 동일한 조치 또는 사안에 관련된 둘 이상의 절차를 병합할 수 있다.

제 23.13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그 보고서를 이 협정의 관련 규정,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부속서 23가에 따라 양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세 번째 패널위원이 선정된 이후 120일,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8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3.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결과 및 그 사실적·법적 근거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에서 따른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또는 양 당사국이 위임사항에서 패널이 다루도록 요청하였던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판정, 그리고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라도 요청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 및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

4. 패널 보고서는 패널위원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패널은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 의견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23.14 조
보고서의 명료화 요청

1. 보고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추가적인 설명 또는 정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항목의 명료화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그러한 요청서 제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해 답변한다.

2.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명료화 요청의 제출로 인해 패널 보고서의 준수를 위한 최종기한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23.15 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패널의 작업을 정지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으며, 그 정지기간은 그렇게 합의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작업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패널의 권한은 소멸한다. 패널의 권한이 소멸하고 양 당사국이 분쟁해결의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 장의 어느 규정도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점에 관하여 패널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라도 패널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23.16 조
보고서의 이행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보고서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2.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고서가 판정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제거한다.

3. 양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및 그 수단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합의하며, 그 수단 및 기간은 일반적으로 패널의 권고에 합치한다. 양 당사국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패널의 권고를 준수한다. 양 당사국이 수단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보고서에 설정된 기간을 준수한다.

제 23.17 조 불이행 및 보상

1. 피소 당사국이 양 당사국이 합의한 또는 패널보고서에 설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패널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설정하기 위해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양 당사국은 협상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보상은 양 당사국이 그에 합의한 시점부터 피소 당사국이 패널보고서를 준수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 23.18 조 이행의 검토

1. 제23.17조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일단 양 당사국이 합의한 또는 패널 보고서에 설정된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되었고, 패널의 판정 및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합치성에 대해 양 당사국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도 제22.2조(협정조정자 - 접촉 부서)에 언급된 협정조정자에게 그 사안을 회부하기 위해 최초의 패널을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패널은 요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회합하며, 그 최초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3. 가능한 경우, 패널은 최초의 패널과 동일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불가능한 경우, 제23.8조에 수립된 절차가 적용되며, 그 경우 거기에 규정된 각각의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제 23.19 조 혜택의 정지

1.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설정하기 위한 기간이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거나,

나.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그렇게 합의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이후 언제라도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2. 제소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과 패널이 제23.18조에 따라 보고서를 발표한 날 중 더 늦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정지될 혜택의 수준은 피소 당사국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무역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4. 제1항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정지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에는,
- 가. 제소 당사국은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우선 혜택을 정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한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5. 어떠한 혜택의 정지도 이 협정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부여된 혜택에 한정한다.

6.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판정된 조치가 제거되거나, 또는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른 때까지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제23.1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제 23.20 조 혜택정지 수준의 검토

1. 피소 당사국이 정지되었거나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협정조정자에게 혜택정지 수준을 검

토하기 위해 최초의 패널을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혜택정지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패널은 최초의 패널과 동일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불가능한 경우, 제23.8조에 수립된 절차가 적용되며, 그 경우에는 그 조에 규정된 각각의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이 패널은 요청을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15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회합하며, 회합 이후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발표한다.

4. 패널이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또는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패널이 동등한 효과라고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부속서 23가 모범절차규칙

적용

1. 다음 절차규칙은 제23.10조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을 자문하거나 지원하도록 당사국에 의해 고용된 인을 말한다.

법정 서기란 지정된 기록원을 말한다.

법정 휴일이란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과 당사국이 공식 휴일로 지정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대표란 당사국의 정부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고용인을 말한다.

서면진술서 및 그 밖의 문서

3. 각 당사국은 서면진술서의 원본 및 최소 4부 이상의 사본을 패널에, 그리고 사본 1부를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진술서 및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는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전송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당사국이 서면진술서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의 인쇄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당

사국은 그러한 서면진술서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전자본도 동시에 전달한다.

4. 서면진술서 및 그 밖의 문서는 패널이 유효하게 접수한 때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기한은 그러한 서면진술서 또는 문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제소 당사국은 세 번째 패널위원이 임명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패널 및 피소 당사국에 완성된 최초 서면진술서를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 또한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진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박 서면진술서를 전달한다.

5.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국의 후속 반박 서면진술서 및 패널 및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서면진술서의 전달을 위한 날짜를 설정한다.

6. 당사국은 변경 내용을 분명히 표시한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서면진술서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상 경미한 오기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7. 문서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이 당사국에 의해 준수되는 법정 휴일 또는 그 당사국의 정부 부서가 정부 명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휴업인 그 밖의 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 다음 근무일에 전달될 수 있다.

입증책임

8.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9.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예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패널의 운영

10. 패널 의장은 모든 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11.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비디오 또는 컴퓨터 연결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될 수 있는 수 만큼의 보조원, 통역가 또는 번역가, 또는 법정 서기를 고용하고 그들이 패널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3.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4.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어느 패널위원이라도 활동할 수 없게 된 날부터 그 승계인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15.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16. 제소 당사국이 자국의 패널요청서에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야기된 부정적 무역효과의 수준에 대해 조사결과를 작성하라고 패널에 요청하는 경우, 패널의 위임사항은 그렇게 표시한다. 요청된 경우, 패널 보고서는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야기된 부정적 무역효과의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다.

심리

17.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그 밖의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최초 및 후속 심리의 일자 및 시간을 정하고, 그 일자 및 시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

로 통지한다.

18. 심리일 5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을 대표하여 심리에 참석할 인 및 그 밖에 심리에 참여할 대표 또는 자문인의 명단을 다른 쪽 당사국 및 패널에 전달한다.

19. 각각의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에 의해 수행된다.

20. 패널은 심리 속기록을 준비하며, 그러한 속기록이 준비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사본을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일방 접촉

21.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지 않고 어느 한 쪽 당사국과 의사소통하지 아니한다.

22. 어느 패널위원도 그 밖의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패널절차의 실제적 대상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양 당사국과 논의하지 아니한다.

정보의 이용가능성

23.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심리·심의·보고서와 패널에 제출한 모든 서면진술서 및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언제라도 자국의 서면진술서를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은 서면진술서에 포함되거나 또는 패널 심리에 제출한 특정 정보를 비밀유

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
한, 다른 쪽 당사국이 패널에게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전문가, 통역가, 번역가, 법정 서기 및 패널절
차와 관련된 그 밖의 개인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
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2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비용, 패널위원 및 그 보조
원의 보수, 그들의 교통비·숙박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비용은 양 당사국
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25. 각 패널위원은 본인 및 그 보조원의 시간 및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
보고를 한다.